

「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1. 19(수)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 2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12. 08(화) 제20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장동기)

-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,
- 종전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,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”를 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47조제1항”을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2조 후단 중 “영 제48조”를 “영 제1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